

##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안내 공고

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. 2. 18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### 1. 폐업 영업소

구분	상호명	영업장소
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(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)	강남할인마트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100, 1층 상가 (북가좌동)

### 2. 소매인 지정신청

가. 공고기간 : 2025. 02. 18. ~ 2025. 02. 25.

나. 신청기간 : 2025. 02. 26. ~ 2025. 03. 05.

다. 신청대상 : 위 폐업신고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

※ 신청일 현재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로, 「담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분 (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상태이어야 함)

라. 접수처 : 서대문구청 제4별관(홍은2동 주민센터) 4층 지역경제과

#### 마. 제출서류

- 소매인지정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, 국가유공자증(해당자), 장애인등록증(해당자)

※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제출은 해당자에 한하며, 반드시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(신청기간 최종일 18:00시 이후 보완제출은 미반영, 일반신청자로 간주함)

#### 바. 지정방법

- 1) 신청 기간 내에 신청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,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(접수 순서와 관계 없음)
- 2)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,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을 통하여 지정 ※ 추첨 일시는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
- 3) 신청기간 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소매인지정은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

사. 기 타 : 「담배사업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(☎330-192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